

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공유관계부인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원고가 소외 ◈◈◈에 대한 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소○○호 약정금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압류한 별지목록 기재의 동산에 대하여 피고는 공유지분 1/2을 가지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소외 ◈◆◆(다음부터 소외인이라고 함)에 대한 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 소○○호 약정금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○○. ○. ○○. 소외인 점유의 별지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습니다.
- 2. 그런데 피고는 위 소외인의 법률상 처이고 위 압류동산의 공유점유자라는 이유로 매각대금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

- 4. 그러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1. 갑 제2호증

1. 갑 제3호증

1. 갑 제4호증

판결문사본

동산압류조서

지급요구서

혼인관계증명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1. 소장부본

1. 송달료납부서

각 1통

1통

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

물 건 목 록

품 명	수 량(대)
○○ 에어컨(23평형)	1
○○지펠 냉장고(67L)	1
○○ 16인치 스탠드 선풍기	1

물건소재지 :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. 끝.

			ō, 😿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 멸 시 효 기 간	아 ○ 년(□ 조멸시효일람표) **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 및 기 간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기 타	· 채무자 아닌 배우자의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, 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압류물이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가 아니라 채무자의 단독소유라는 것을 확정함 으로써 부당한 지급요구를 배제할 수 있음(민사집행법 제221조 제3항).		

※ (1) 관 할

공유관계부인의 소(訴)는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함. 다만,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합의부가 관할하고(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), 여러 개의 공유관계부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그밖의 소도 함께 관할함(민사집행법 제156조 제2항).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확인 및 형성의 소